#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02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성일종・인요한・유용원

박상웅・강선영・조배숙

이종배 • 고동진 • 박덕흠

조정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경기침체·인구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결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전국에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해(생산유발금액 기준)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충청도· 전라도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더 극심할 것으로, 폐지지역을 '정의로 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 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하고자 함.

또한 폐지지역 지원 및 진흥사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녹색산업의 체계적인지원 기관으로서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8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505호)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8조의2(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①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진흥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정책·제도의 조사·연구·기획
  - 2.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3.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 4. 다음 각 목의 사업의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 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석탄화력발전소 페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지지역을 포함한다) 지원 대책

-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진흥사업
- 5. 탄소중립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 6.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 양성
- 7.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있다.
- ⑤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추진단의 설치,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정관 작성·정관인가 및 설립등

- 기 등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라 할 수 있다.
- 제3조(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국탄소 중립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탄소 중립진흥원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설립추진단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설립추진단은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설립추진단이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 국타소중립진흥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설립추진단을 이 법에 따른 한국탄소중립진흥원으로 본다.
  - ⑥ 이 법 시행 전까지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업무를 대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ul> <li>&lt; 선 설&gt;</li> <li>제68조의2(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①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li> <li>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li> <li>③ 진흥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사업을 한다.</li> <li>1. 정책·제도의 조사·연구·기획</li> <li>2.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li> </ul> |
|---|
| 3.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         립 지원         4. 다음 각 목의 사업의 조사・         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         로운전환 특별지구(「석탄   |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폐지지역을 포 함한다) 지원 대책

- 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진흥사업
- 5. 탄소중립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 6.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 양 성
- 7.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u>· 협력</u>
-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 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 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 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